
**2025년 서부권역 중소기업
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
[공통 운영기준]**

2025. 5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I.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
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이란,

경기도 27개 시군에 소재한 연매출 120억 이내의 지방세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출원, 시제품, 시험분석, 홈페이지, 전시회, 카탈로그 등 창안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여러 세부과제를 각 한도 내에서 복수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.

2025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					
모집 일정	1차 모집 : 3. 17(월) ~ 3. 28(금) / 완료 2차 모집 : 5월 29일(목) ~ 6월 20일(금) ·7월 4일 발표 예정 3차 모집 : 7월 중 ·시군별 예산상황에 의한 4차 모집 : 11월 중 ·시군별 예산상황에 의한 * 신청가능 과제는 모집공고에서 확인				
신청 방법	경기기업비서 사이트(www.egbiz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				
지원 과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전 신청과제</th> <th>사후 신청과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p>앞으로 진행할 과제신청</p> <p>시제품제작(금형,목업)</p> <p>제작계획, 제작업체, 견적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온라인신청</p> <p>↓</p> <p>심사 후 선정</p> <p>↓</p> <p>진행 및 비용지출</p> <p>↓</p> <p>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</p> <p>↓</p> <p>신청기업에 지원금지급</p> </td> <td> <p>접수 마감일까지 완료한 과제 신청 (2025년도 진행완료 건 소급신청)</p> <p>국내외특허출원, PCT출원, 국내실용신안출원, 국내외상표출원, 국내디자인출원, 국내외규격인증, 시험분석, 국내외전시박람회</p> <p>2025년 1월부터 접수 마감 시점까지 진행완료(비용지출) 건 보유</p> <p>↓</p> <p>온라인신청 (지원금신청서 및 지출증빙 제출)</p> <p>↓</p> <p>심사 후 선정</p> <p>↓</p> <p>신청기업에 지원금지급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사전 신청과제	사후 신청과제	<p>앞으로 진행할 과제신청</p> <p>시제품제작(금형,목업)</p> <p>제작계획, 제작업체, 견적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온라인신청</p> <p>↓</p> <p>심사 후 선정</p> <p>↓</p> <p>진행 및 비용지출</p> <p>↓</p> <p>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</p> <p>↓</p> <p>신청기업에 지원금지급</p>	<p>접수 마감일까지 완료한 과제 신청 (2025년도 진행완료 건 소급신청)</p> <p>국내외특허출원, PCT출원, 국내실용신안출원, 국내외상표출원, 국내디자인출원, 국내외규격인증, 시험분석, 국내외전시박람회</p> <p>2025년 1월부터 접수 마감 시점까지 진행완료(비용지출) 건 보유</p> <p>↓</p> <p>온라인신청 (지원금신청서 및 지출증빙 제출)</p> <p>↓</p> <p>심사 후 선정</p> <p>↓</p> <p>신청기업에 지원금지급</p>
	사전 신청과제	사후 신청과제			
<p>앞으로 진행할 과제신청</p> <p>시제품제작(금형,목업)</p> <p>제작계획, 제작업체, 견적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온라인신청</p> <p>↓</p> <p>심사 후 선정</p> <p>↓</p> <p>진행 및 비용지출</p> <p>↓</p> <p>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제출</p> <p>↓</p> <p>신청기업에 지원금지급</p>	<p>접수 마감일까지 완료한 과제 신청 (2025년도 진행완료 건 소급신청)</p> <p>국내외특허출원, PCT출원, 국내실용신안출원, 국내외상표출원, 국내디자인출원, 국내외규격인증, 시험분석, 국내외전시박람회</p> <p>2025년 1월부터 접수 마감 시점까지 진행완료(비용지출) 건 보유</p> <p>↓</p> <p>온라인신청 (지원금신청서 및 지출증빙 제출)</p> <p>↓</p> <p>심사 후 선정</p> <p>↓</p> <p>신청기업에 지원금지급</p>				

※ 모집공고별로 신청가능한 과제가 상이하오니 통합공고문 반드시 확인

구분	기존('24년)	변경('25년)
지원횟수 제한	- 연간 기업당 최대 2,000만원 한도 지원	- 연간 기업당 최대 2,000만원 한도 및 기업당 3회 제한
모집시기 정례화	- 세부과제별 모집시기 상이	- 세부과제별 모집시기 *1차(3월): 사전과제 (완료) *2차(5월): 사후과제 및 시제품 *3차(7월) 사전 및 사후과제 *4차(11월) 사전 및 사후과제 (시군별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평가표	- 사전 및 사후과제 평가표 상이	- 사전 및 사후과제 평가표 통합
	- 고용창출 증가(유지) 가산점 부여	- 고용창출 부분 일반 평가항목으로 편입
	- 기업인증서(기술 및 기업) 별도 구분, 각 5개 이상 만점 부여	- 기업인증(기술 및 기업) 통합, 각 2개 이상 만점 부여
공고문 및 신청서	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시 제출	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필수 제출 (고용창출 기존 가산점에서 필수 평가항목으로 신설)
	- 지원결정기업 완료보고서 (구)이지비즈 시스템 제출	- 완료보고서 담당자 이메일 제출
	- 지원성과 및 사업만족도 설문서 '충실성 및 차별성' 항목 조사	- '세부과제 다양성' 항목으로 변경
	- 해외 전시박람회 해상운임 비용만 지원	- 현지 운송 상황 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상운송이 어려울 경우 '항공운송 편도 운임' 가능

가.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·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나. 사업기간 : 2025. 3월 ~ 시군별 예산소진 시 까지

다. 지원규모 : 각 과제별 한도내 지원(여러 과제 지원시 **기업 당 연간 3회 및 2천만원 이내**)

라. 지원내용

분 야	단위과제별 지원
창안개발	· 국내·외 산업재산권출원, 국내·외 규격인증, 산업기술정보제공
제품생산	· 시제품 제작(금형, 목업), 시험분석
판로개척	· 홈페이지 제작, 국내·외 전시회 참가, 제품패키지 개선, 국내홍보판로(전문잡지, 홍보동영상), 카탈로그 제작

마. 지원대상

- 사업비 출연 시·군 소재(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)한 연매출 120억 이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

※ 경기도에 본사와 공장 둘 다 소재시 본사 소재지 우선

< 사업비 출연 시군 >

- 동부권(5) : 광주, 하남, 이천, 양평, 여주
- 서부권(7) : 부천, 시흥, 광명, 김포, 군포, 의왕, 과천
- 남부권(5) : 평택, 안성, 수원, 화성, 오산
- 북부권(10) : 가평, 고양, 동두천, 양주, 연천, 의정부, 파주, 포천, 남양주, 구리

< 지식기반서비스업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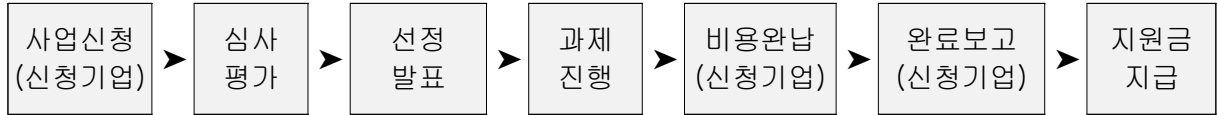
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(별표1)

-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창업보육센터(중소벤처기업부 및 시/군 지정) 또는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우대
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(17개소) 입주기업 우대

- 수원, 성남, 안양, 평택, 안성, 부천, 김포, 고양, 남양주, 의정부(1)(2), 파주, 구리, 양주, 포천, 의왕, 판교

-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)
 -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(별표2)
 -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
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
 -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
 - 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
 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他사업 지원과제 참여 중 부당지원 수혜자로 최종 제재 결정된 기업

바. 지원절차



사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경기기업비서 사이트(www.egbiz.or.kr) 공고 참고(각 권역별 모집일 상이)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
경기기업비서 사이트(www.egbiz.or.kr) 접속 ▶ 지원사업(분야별 지원사업) ▶ 해당 공고 클릭 ▶ 상단의 '세부사업'란의 과제명 클릭 ▶ 상세페이지 하단의 [지원사업 신청하기] 클릭 ▶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첨부 ▶ [접수] 클릭하여 신청완료

-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필수	① 과제별 추진계획서 ②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(국세청 발급) ③ 전년도 재무제표(국세청 또는 세무서) ④ 지방세납세증명서(민원24 발급) ⑤ 제작업체 견적서 ⑥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'23년도 12월 귀속분, '24년도 12월 귀속분 / 국세청 발급)
선택 (가점)	· 공장등록증명원(민원24, 팩토리온 발급) ·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· 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원부

아. 문의 및 접수처

권역구분	지 역	담당자
동부권역 (동부권역센터)	하남, 이천	송지호 과장 031-830-8562
	광주, 양평, 여주	천정희 과장 031-830-8566
서부권역 (서부권역센터)	부천, 김포	김장식 차장 070-7116-4812
	시흥, 광명, 군포, 의왕, 과천	강정일 대리 070-7116-4816
남부권역 (남부권역센터)	안성, 평택, 화성, 오산, 수원	김남수 대리 031-672-3588
북부권역 (북부권역센터)	고양, 포천 가평, 양주, 의정부, 파주 구리, 남양주, 동두천, 연천	김명선 과장 031-850-7127 안혜진 대리 031-850-7131

자. 지원내용

- 차수별 지원한도 금액 통합공고문을 필히 확인
- 총비용의 60% 각 지원한도내 지원(기업자부담 40%), 부가세 및 관세 등 지원제외

구분	단위 지원사업	세부내용	최대 지원한도 (단위 : 만원) (지원비율)	자부담	총소요 비용	
창안개발	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(사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표, 디자인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 ※상표출원 : 국내·해외 / 디자인출원 : 국내 	국내상표 200	133	333	
			해외상표 500	333	833	
			디자인 280 (60%)	186	466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특허, 실용신안 출원 시 관납료, 선행기술조사비, 우선심사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 	국내특허 520	346	866	
			실용신안 360 (60%)	240	600	
			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	333	833	
	(사후)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국내)KS,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,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(해외)UL, FCC 등 해외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	국내 300	200	500	
해외 700 (60%)			466	1,166		
	산업기술 정보제공	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과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 후 기업체에 제공	200 (100%)	0	200	
제품생산	시제품제작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	금형 1,500	1,000	2,500	
			목업 500 (60%)	333	833	
	(사후) 시험분석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·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비 지원 	200 (60%)	133	333	
판로개척	홈페이지 제작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글/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	200 (60%)	133	333	
	(사후)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외 개최되는 전시·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	국내 300	200	500	
			해외 500 (60%)	333	833	
		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, 포장지 등 디자인·제작 비용 지원 	300 (60%)	200	500
	국내 홍보판로 지원	전문 잡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	300 (60%)	200	500
		홍보 동영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물 제작비 지원(일반영상 또는 3D영상 제작) 	일반 300	200	500
3D 400 (60%)				266	666	
	카탈로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문 또는 수출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해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	200 (60%)	133	333	

※ **(사후)** 표기 과제는 진행완료 후 신청하는 사후신청과제임.(미표기된 과제는 사전신청과제)

※ 시군별 신청가능 과제 변동가능(모집공고 참고)

※ **'자부담'** 은 최대 지원한도를 받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기업 참고용임

[별표 1]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
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

해당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○ 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
○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581
○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5912
○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59201
○ 전기통신업	612
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○ 정보서비스업	63
○ 연구개발업	70
○ 광고업	713
○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714
○ 경영컨설팅업	71531
○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
○ 전문디자인업	732
○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	73902
○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73903
○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	73904
○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
○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74100
○ 보안시스템 서비스업	75320
○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75991
○ 전시 및 행사 대행업	75992
○ 포장 및 충전업	75994

※ 산업 업종코드 확인방법

☞ <http://kostat.go.kr>(통계청사이트) → 통계분류포털 → 한국표준산업분류 → 검색 → 분류검색 →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→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

[별표 2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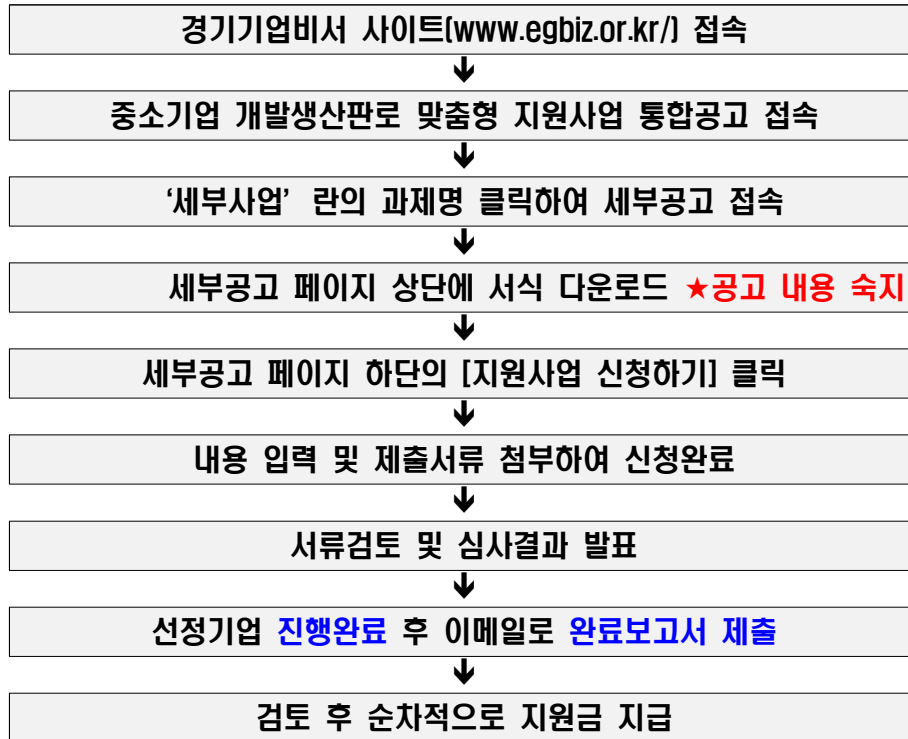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

업종	품목코드	해당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	46109中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46209中	앞담배 도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6416中	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~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4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63999中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69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531中	기획부동산업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中	흥신소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4中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9	기타 gambling 및 베팅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96992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96999中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※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 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

시제품, 홈페이지, 제품패키지,

국내홍보판로(전문잡지,홍보동영상), 카탈로그



특허·실용신안·PCT 출원, 상표·디자인출원, 규격인증, 시험분석, 전시박람회



4.1 지원사업 신청 시

가.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

- 접수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과제명과 접수여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, 신청과제 변경은 불가함
-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수정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-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- 재무제표 작성·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, 신규 창업기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) 제출
-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,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
- 사업비 출연시군 소재 여부 및 휴·폐업 확인을 위해서 **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등 발급)** 제출
 - ※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
-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**공장등록증명원(민원24, 팩토리온 등 발급)** 제출
 - ※ 공장등록증은 불인정
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,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(www.bi.go.kr(창업넷) 확인), 시·군 지정 창업보육센터(입주계약서) 입주여부 확인
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(17개소) 입주기업 신청 시, 경기창업벤처센터 (입주계약서) 입주여부 확인

나. 신청기업이 제작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

-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하여야 함
-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
- 신청기업이 동일과제의 제작업체가 될 수 없음

다.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

- 공고일 기준,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

- ① 민원야기, 환경오염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②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
-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
- ④ 휴·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⑥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টে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

4.2 지원사업 선정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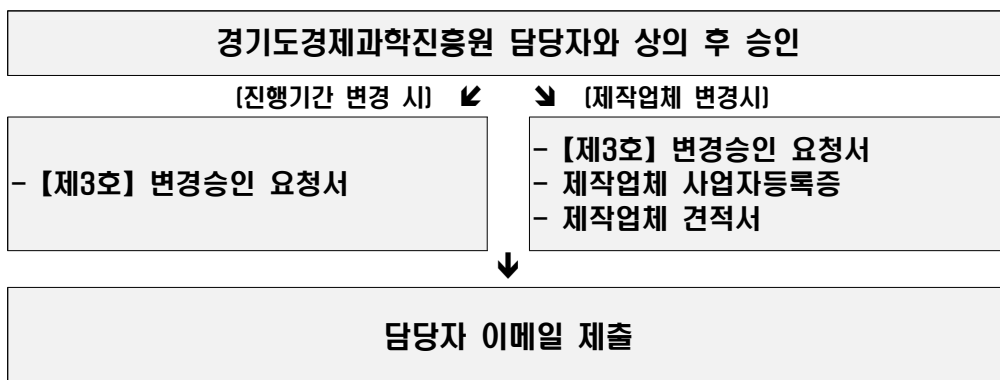
가. 선정되신 모든 기업에게

- 본 지원사업은 사업비 출연 27개 시군 내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27개 시군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.
- 경기도와 시군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선정기업은 과제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,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원절차 및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지원결정통지문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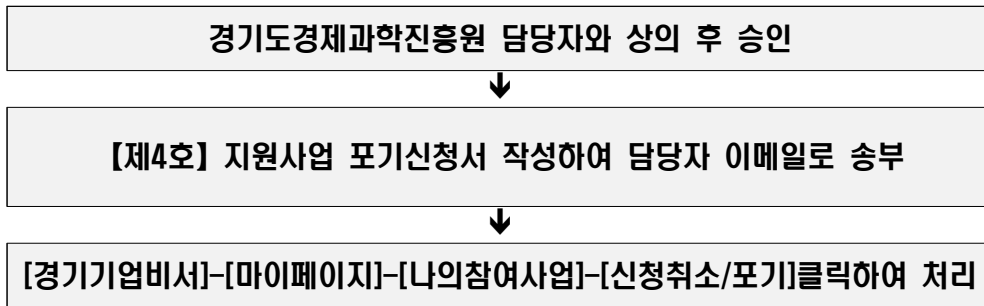
- 기업별 자세한 선정내역은 선정발표일에 기업담당자의 이메일로 발송되는 “지원결정 통지문(별표3)” 을 반드시 숙지
- 지원결정통지문 확인
 - 지원결정통지문의 선정과제명, 지원내용, 제작(대행)업체, 진행기간, 총소요비용, 지원결정액, 유의사항 등 확인
 - 지원결정통지문의 ‘총소요비용’, ‘지원결정액’ 은 신청서 작성시 산정오류(견적금액, 자부담률, VAT포함 등) 및 예산한도 등으로 심사과정에서 재산출되어 기업에서 신청·제출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
- 시제품제작(금형)의 경우, 2차 평가위원회(대면평가), 원가분석을 통해 지원결정액이 최종 확정되어 통지됨
- 선정기업 유의사항 및 지원금 지급신청(완료보고서 제출)안내 필독
 -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

다.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



- 기지원결정액 증액 및 신청과제 분야 변경은 불가를 원칙으로 함
- 진행기간 또는 제작업체 변경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, 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후 승인을 득하여 **【제3호】 변경승인 요청서**를 제출해야 함
- 사전승인 없이 대행업체, 과제범위 및 내용 등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불인정

라. 지원결정 중도포기 신청



- 지원결정된 지원사업을 중도포기 시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와 상의 후 승인을 득하여 **【제4호】 지원사업 포기신청서**를 제출해야 함
- 선정기업의 담당자 퇴사 등 기업 내부사정으로 인한 과제 미진행으로 중도포기 경우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
- 지원사업을 중도포기함에 따라 제재사항 및 차년도 지원사업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
- 중도포기 시 선정지위 회수 후 배정된 지원예산을 후순위 기업 및 추가모집 선정기업에게 배정·지원함

마. 지원결정 취소사항

- 타 기관, 타 지원사업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사업 공고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(사후신청 사업은 제외)
-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, 제작기간, 과제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
-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, 소요비용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
- **사업완료 시점 선정기업이 어떠한 답변 없이 과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완료 제출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(과제)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음**
- 전문가 판단에 의거 완료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,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-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완료 시점에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원 결정 취소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他사업 지원과제 참여 중 부당지원 수혜자로 최종 제재 결정된 경우 및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,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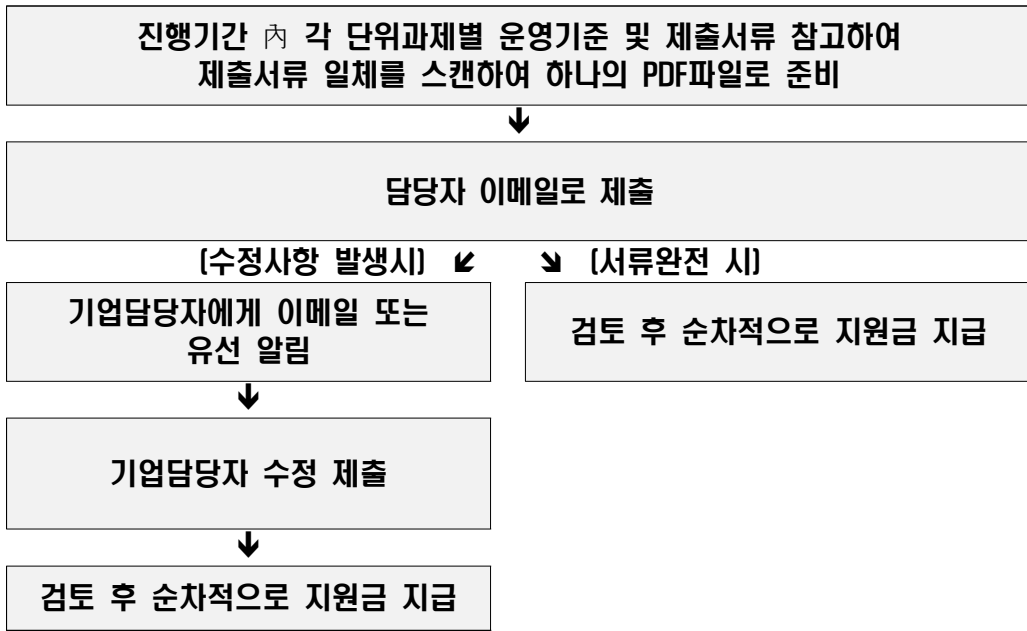
바. 위법·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「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시)
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
[별표 3] 선정기업에게 발송되는 지원결정통지문

2025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			2025. . .								
			oo권역센터								
2025년 ○차 지원결정 내역											
기업명	(주)가나다라사	대표자	홍길동								
소재지	광주	사업자번호	124-45-67890								
신청분야	카탈로그										
지원내용	카탈로그 1,000부 제작										
제작(대행)업체	○○특허법률사무소	진행기간	0424~0724								
총 소요비용	2,600,000	지원결정액	1,300,000								
<p>○ 선정기업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원결정액 증액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하며, 진행기간과 제작(대행)업체의 변경은 1회에 한해 담당자 승인 후 변경가능 - 최종 소요비용이 당초 견적서상 소요비용 보다 적은 경우, 지원금액은 실적행금액(VAT제외) 기준으로 감액 조정됨 - 지원금은 2건으로 분할(市예산 + 道예산)하여 지원금 지급통장에 입금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지원금은 실제 집행내역에 대한 적합성 검토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타 기관 중복지원 확인 등의 부적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함. - 산업재산권 출원 과제는 법인기업의 경우,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출원은 지원 제외 - 시제품제작(금형) 과제의 경우, 원가분석을 통해 지원결정액 최종 확정통보됨. - 모든 산출물(제작물)은 선정기업명이 확인 가능해야함. - “공동운영 기준“ 및 ”단위과제별 운영기준“에 의거하여 철회사유 발생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. <p>○ 완료보고서 제출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행기간 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완료보고서 일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사후신청과제(국내외 상표, 디자인, 시험분석, 국내외 규격인증)는 별도의 지원금신청(완료보고서 제출) 불필요, 향후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예정임. - 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진흥원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회신 요망 <p>○ 제출서류</p> <table border="0"> <tr> <td>① 완료보고서</td> <td>② 지원성과 설문서</td> </tr> <tr> <td>③ 지방세 납세 증명서(유효기간 확인)</td> <td>④ 전자세금계산서</td> </tr> <tr> <td>⑤ 온라인 입금확인증</td> <td>⑥ 기업명의 통장사본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⑦ 기타 각 지원사업별로 요청하는 서류</td> </tr> </table> <p>※ 지원분야별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공고문(제출서류 항목) 반드시 확인 요망</p> <p>※ 완료보고서와 증빙서류 제출은 이메일로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~⑦까지 모든 서류는 순서대로 원본스캔하여 PDF파일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- 제작물 우편제출(카탈로그 2부, 전문잡지, 제품패키지, 홍보동영상(USB) (우편주소 : oo시 oo동 oo 권역센터) 				① 완료보고서	② 지원성과 설문서	③ 지방세 납세 증명서(유효기간 확인)	④ 전자세금계산서	⑤ 온라인 입금확인증	⑥ 기업명의 통장사본	⑦ 기타 각 지원사업별로 요청하는 서류	
① 완료보고서	② 지원성과 설문서										
③ 지방세 납세 증명서(유효기간 확인)	④ 전자세금계산서										
⑤ 온라인 입금확인증	⑥ 기업명의 통장사본										
⑦ 기타 각 지원사업별로 요청하는 서류											

4.3 선정기업 완료 시



가. 선정기업의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

- 선정기업이 총소요비용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선 지출한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, 검토 후 선정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
- 선정기업이 비용 지출시 선정기업명의 계좌에서 제작업체명의 계좌로 온라인 이체(가족 및 내부직원명의 계좌 불가)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, 지원금 지급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. 단,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완료보고서 **【제5호】** 전자세금계산서 미사용 사유서를 함께 제출

2014.7.1부터 직전년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

- 법인카드 사용 시 ①**법인카드 사본(앞면사진)**, ②**카드사용 영수증**, ③**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** 자료 제출에 한해 비용증빙 인정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결정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업 자부담임

나.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

- **제출기한** : 선정기업이 사업신청 당시 온라인신청서에 기재한 ‘진행기간’ 內 (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 연장가능)
 - 진행기간 내 과제 조기 완료시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라 지원금 조기 지급함
 - 10월에는 회계업무 집중으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, 가능한 과제추진을 조기에 완료하고 결과보고 및 지원금신청서 제출 요망
- **제출서류** : 각 단위과제별 ‘운영기준 및 서식’ 을 참고하여 제출서류 일체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, 제작물은 우편으로 제출

- 온라인 제출 : 완료보고서, 설문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세금계산서, 온라인
입금증(이체확인증), 선정기업 통장사본(선정기업명 계좌)

- 우편 제출 : 제작물

[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, 시흥비즈니스센터 103호 GBSA 서부거점센터]

☞ 각 단위과제별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 “단위과제별 운영기준”을 확인

- 시제품제작(금형·목업) 과제는 결과보고서 접수 후 진흥원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통해 제작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※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실사 가능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- 지원금은 선정기업 기업명의로 계좌로 지급
- **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함**